

ABL

TAX



[2017년 8월 1일 제작]

세테크의 시작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1704

※ 본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상품은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Better Life

1954년 출범한 ABL생명은 60여 년의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보험 그룹의
일원으로서 쌓아온 선진 상품개발능력,
디지털 고객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110만 명의 고객에게 최상의
보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총수입보험료 1조 1,683억원(2016년 12월 기준)
- 총자산 17조 6,028억원(2016년 12월 기준)

〈출처: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고객의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보장하는 ABL생명

- 1954년 설립,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60년 역사와 전통
-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선진 금융 기법과
노하우, 변액·보장성보험부터 연금·저축성보험까지
30여종의 폭넓은 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 보장
- 인터넷/모바일 전자서명청약시스템과
카카오페이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보험가입, 청약, 납입,
사고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처리
- 업계 최초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간편하게 송금
- 2012년 보험업계 최초 변액연금보험의 '금융자산운용방법'에
대한 특허 획득(* 특허 제 10-1211809호)

당신과 평생 함께할 연금저축보험 - 세테크의시작 무배당 연금저축보험1704

평생동안 넉넉한 연금을 지급하는 장수시대 최고의 금융상품

-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노령화 시대에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해 드리므로, 품위있는 노후준비에 적합합니다.
(종신연금형 선택 시)

노후계획에 따라 다양한 노후자금 설계

- 평생 받으실 연금을 정해진 기간(10년, 15년, 20년 등)에 나누어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확정연금형,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는 종신연금형(정액형) 등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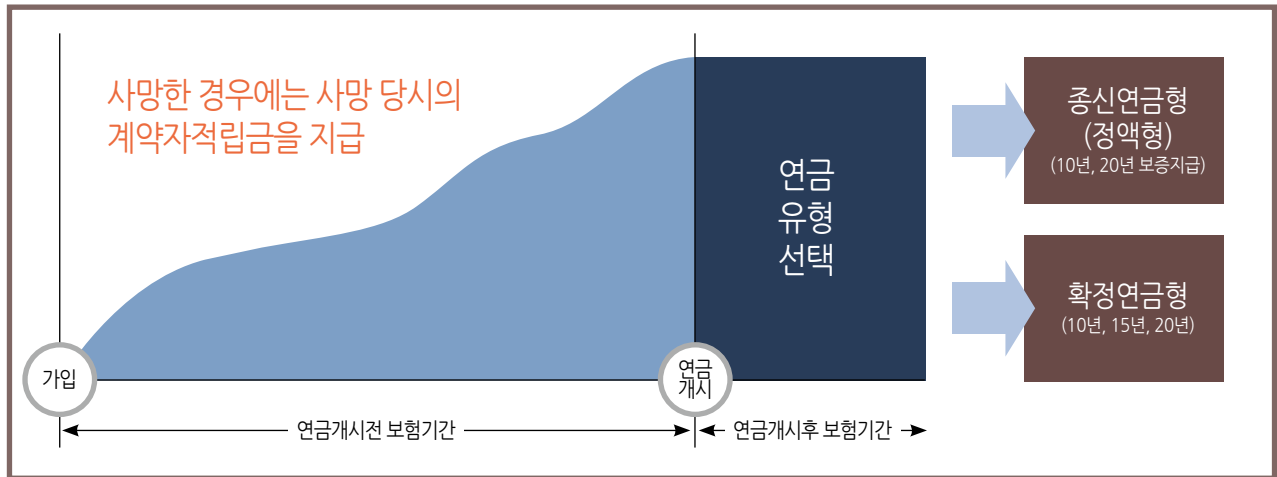
- 공시이율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자금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 1.5%, 10년초과 0.5%)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주계약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가 부가됩니다.
- 중도해지 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상품도해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종신연금형(정액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년, 2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 하여야 하며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순 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 부터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확정 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 보험의 약관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의 세제혜택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 본 안내자료는 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40세 남자,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20년납 60세 연금개시, 월납, 단위:원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공시이율 2.30% 가정		평균공시이율(3.0%), 공시이율 (2.30%) 중 작은 값		최저보증이율 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500,000	466,358	31.1%	466,358	31.1%	464,521	31.0%
6개월	3,000,000	1,890,634	63.0%	1,890,634	63.0%	1,884,207	62.8%
9개월	4,500,000	3,322,829	73.8%	3,322,829	73.8%	3,309,057	73.5%
1년	6,000,000	4,762,942	79.4%	4,762,942	79.4%	4,739,072	79.0%
3년	18,000,000	16,576,606	92.1%	16,576,606	92.1%	16,368,366	90.9%
5년	30,000,000	28,927,318	96.4%	28,927,318	96.4%	28,340,951	94.5%
10년	60,000,000	62,245,314	103.7%	62,245,314	103.7%	59,763,911	99.6%
15년	90,000,000	100,080,954	111.2%	100,080,954	111.2%	90,258,951	100.3%
20년	120,000,000	142,472,500	118.7%	142,472,500	118.7%	121,524,028	101.3%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7년)의 평균공시이율 3.0%, 2017년 3월의 공시이율 2.3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10년이하는 1.5%, 10년 초과는 0.5%입니다.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본 상품은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시 최저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입니다. 연금개시시점까지 유지시 예시된 환급률과 관계 없이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연금액 예시표

(예시 I) (65)세부터 연금 개시 - 매월 지급(최저보증이율 기준)

[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단위:만원)]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2,447만원) 예상

구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 형	10년보증	매월 39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38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10년 선택시	매월 105만원씩 10년간 지급	예정 수령액	10년간 총	12,694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71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2,851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54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3,010만원

연금액 예시표

(예시Ⅱ) (65)세부터 연금 개시 - 매월 지급(평균공시이율 3.0%, 공시이율 2.30% 중 작은 값 기준)

[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단위:만원)]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5,950만원) 예상

구 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 형	10년보증	매월 64 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62 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10년 선택시	매월 146만원씩 10년간 지급	예정 수령액	10년간 총	17,583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103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8,562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81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9,574만원

(예시Ⅲ) (65)세부터 연금 개시 - 매월 지급(공시이율 2.30% 기준)

[기준 : 적립형, 남자40세, 주계약 월납입 기본보험료 50만원, 연금개시나이65세, 20년납, 월납, 연금월액기준(단위:만원)]

연금지급 개시 시점 일시금(해지)수령시 (15,950만원) 예상

구 분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 생존시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정액 형	10년보증	매월 64 만원씩 평생 지급			
		20년보증	매월 62 만원씩 평생 지급			
확정연금형		10년 선택시	매월 146만원씩 10년간 지급	예정 수령액	10년간 총	17,583만원
		15년 선택시	매월 103만원씩 15년간 지급		15년간 총	18,562만원
		20년 선택시	매월 81만원씩 20년간 지급		20년간 총	19,574만원

-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 종료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연금개시시점 일시금(해지) 수령시 예상금액은 연금개시 해당일 전일 주계약 해지시 예상 수령금액입니다.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두 가지 연금지급형태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별 선택비율을 선택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 지급형태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실제 연금지급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액도 변동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서, 매 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당일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상기 예시한 종신연금액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연금지급 당시의 연금사망률 적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지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도 각 연금지급횟수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 중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보증지급기간(확정된 연금 지급기간)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보증지급기간(확정된 연금 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7-PA149(6 of 8)호

가입을 위한 안내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구 분		납입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주계약	세테크의시작 (무)연금저축보험 1704	5년	5년	매월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1,000원
			6년	매월 15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7년 이상	매월 12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10년, 15년, 20년, 전기납	10년, 15년, 20년 이상, 전기납		
제도성특약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연금저축추가납입특약
 -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당월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 특약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주계약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 특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예금자보호제도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계약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의료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의료비인출」이란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의료비인출은 연금 개시 이후 가능하며,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에 대한 책임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및 연금외수령으로 일시에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범위 내로 합니다.
- 다.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 계약자는 계약 청약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세제혜택

- 연간 납입 보험료 중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그 추가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보험료를 합산한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투자수익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 중도해지 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점 또는 고객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부리이율에 대한 사항

-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만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취급특약에 관한 사항

-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제3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족상담 및 민원상담 안내

<불만 접수(상담) 방법 안내>

-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소비자부 (우)07332
- 전화: ABL생명 콜센터: 국번없이 1588-6500(이동전화: 02-1588-6500) ABL생명 소비자부: 02-3787-7482~9, 080-807-7493(수신자부담)
- 팩스: 02-3787-8719
- 인터넷: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70 / 영남지역본부: 051-558-7801~4 / 대구지부: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 원주지부: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www.kia.or.kr(생명보험협회)